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987호
 - 가) 예고기간: 2023. 06. 12. ~ 07. 0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 따라 상설(강행규정)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비상설(임의규정)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촉직으로 지정된 위원장(2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명)으로 변경 및 비상설 운영에 따른 자동 해산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5항)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 및 제2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의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개정)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부칙 안 제2조) 현재 구성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이후 위촉위원을 자동 해촉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이에 관련되는 위원 임기·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 함.